

2024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

충북도 내 고용보험가입자 중 1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경감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 『2024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사업』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4년 2월 1일

충청북도지사

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

□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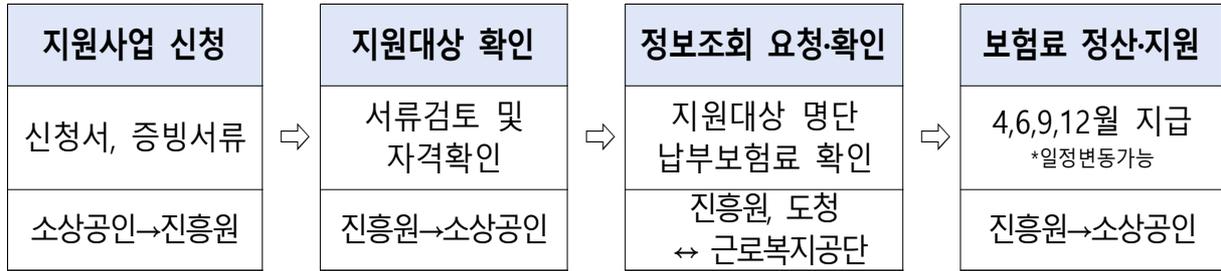
- (사업목적)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부담 경감 및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촉진
- (사업명)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- (접수기간) 2024년 2월 1일 ~ 예산소진시
- (지원대상) 고용보험 가입자 중 도내 1인 소상공인
- (지원내용) 신청일로부터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10%를 3년간 지원

※ 24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지원(예산소진시 해당 월부터 지원) / 정부사업(소진공) 중복수혜 가능

기준등급	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
기준보수(천원)		1,820	2,080	2,340	2,600	2,860	3,120	3,380
월 보험료(A)		40,950	46,800	52,650	58,500	64,350	70,200	76,050
정부 (50~80%)	지원비율	80%		60%		50%		
	월 지원금액(B)	32,760	37,440	31,590	35,100	32,175	35,100	38,025
도 (10%)	지원비율	10%						
	월 지원금액(C)	4,090	4,680	5,260	5,850	6,430	7,020	7,600
본인부담액 (A-B-C)	1인 자영업자 (부담율)	4,100 (10%)	4,680 (10%)	15,800 (30%)	17,550 (30%)	25,740 (40%)	28,080 (40%)	30,425 (40%)
실업급여액(천원 단위)		1,092	1,248	1,404	1,560	1,716	1,872	2,028

※ 고용노동부 「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」 및 중소벤처기업부 「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.

○ (지원절차)

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(제출서류)

구분	서류명	비고
1	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(서식1)	필수
2	개인정보 수집·활용동의서(서식2)	
3	행정정보공동이용활용동의서(서식3)	
4	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 신분증 사본	
5	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	
6	4대 보험 가입자명부	법인에 한함

○ (신청방법)

- 전자메일 : cbsb4@naver.com

* 제목:2024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서_성명(홍길동)

- 방문/등기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, 2층

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고용보험료지원사업 담당자

○ (문의처) 고용보험료지원사업 담당자(☎043-230-9764)

□ 유의사항

○ 지원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 할 수 있으며, 추가서류 제출 불응시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○ 예산소진시 ①기준보수 등급이 낮고, ②직전년도 매출액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우선 지급 예정입니다.

○ 충청북도 외 사업장 이전, 근로자 채용, 고용보험 해지 등 지원 중단 사유 발생시, 중단사유일 이전 기간만 일할계산하여 지원합니다.

○ 개인정보동의서 및 행정정보 이용 미동의시 사업참여가 불가능합니다.

참고1

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

① 고용보험 가입대상

-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,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,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(임의가입)
- 단,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, 가입제한 업종*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

*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, 부동산 임대업 등

② 보험료

-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*의 225% (실업급여 2%,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0.25%)

③ 실업급여

- (수급내용)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, 비자발적 폐업·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~210일간 지급
- (수급조건)

- ① 적자지속 :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
- ② 매출액 감소 :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(기준월)의 월평균 매출액이 ①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②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% 이상 감소
- ③ 매출액 감소추세 :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
- ④ 기 타 : 사업조정 신청업종,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, 자연재해 피해, 질병·부상 등

<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수준>

(단위: 원)

구 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
기준보수	1,820,000	2,080,000	2,340,000	2,600,000	2,860,000	3,120,000	3,380,000
월 실업급여	1,092,000	1,248,000	1,404,000	1,560,000	1,716,000	1,872,000	2,028,000
월 고용보험료	40,950	46,800	52,650	58,500	64,350	70,200	76,050